

서울특별시의회
제32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11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

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

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

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시립체육시설

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 협조 규정의

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,

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9조의 경우,

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태권도 훈련을
활성화하고자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
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